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박대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2902호)

2025.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정지은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공제율 상향 등	3
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 개요 · 3	
나. 국가전략기술 관련 세액공제 이월공제 기간 연장	15

I. 개요

1. 박대출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2902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박대출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5. 9. 11.

(3) 회 부 일 : 2025. 9. 12.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투자세액공제 등을 통하여 공제할 세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전략기술의 경우 제품 개발기간에 통상 10년 이상이 소요되는데 현행 10년의 이월공제 기간은 투자부터 수익창출까지 걸리는 기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투자 유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전략기술의 경우 이월공제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여 국가전략기술분야에 안정적인 투자가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안 제144조제1항).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공제율 상향 등

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 개요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이하 “R&D 세액공제”)는 ① 일반 R&D 세액공제와 ②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③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로 구분되어 있음.

일반 R&D 세액공제는 기업이 ‘당기분 방식’과 ‘증가분 방식’ 중 유리한 계산방식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음.

‘당기분 방식’은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R&D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며, 기업규모에 따라 대기업은 0~2%, 중견기업은 8~20%, 중소기업은 2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함. ‘증가분 방식’은 직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R&D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고, 대기업은 25%, 중견기업은 40%, 중소기업은 5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함.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와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는 ‘당기분 방식’이 적용되는데, 미래 유망성 및 산업 경쟁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신성장·원천기술¹⁾은 대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1항 본문 생략)

1. 연구·인력개발비 중 미래 유망성 및 산업 경쟁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

기업 및 중견기업에 대해 연구개발비의 20~35%를 공제하고, 중소기업은 연구개발비의 30~40%를 공제함.

국가전략기술은 국가경제안보 목적상 중요하고 산업파급효과가 큰 기술²⁾로서 신성장·원천기술 대비 공제율이 10%p 높은 수준이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R&D 비용의 30~45%를 공제받고, 중소기업은 40~50%를 공제받음.

2024년 세법개정을 통해 중소기업 졸업유예 기간 종료 후 세액공제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점감구조가 도입되어 유예기간 종료 이후 5년(일반) 또는 3년(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동안은 일반 중견기업 대비 높은 공제율을 적용함.

[R&D 세액공제 유형별 공제율]

(단위: %)

구 분	기 본			추가 ^{주)}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일반 (당기분 방식)	최대 2	8~20 ¹⁾	25	-
신성장·원천기술	20	20, 25 ²⁾	30	최대 10
국가전략기술	30	30, 35 ³⁾	40	최대 10

주) 추가분: 최대 10%(R&D 지출액 / 매출액 × 3)

1) (~3년)20%, (4~5년)15%, (6년~)8%

2) (~3년)25%, (4년~)20%

3) (~3년)35%, (4년~)30%

정되는 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하 “신성장·원천기술”이라 한다)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가목의 비율과 나목의 비율을 더한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1항 본문, 제1호 생략)

- 연구·인력개발비 중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운송 및 이동 수단, 바이오의약품, 인공지능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와 관련된 기술로서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하 “국가전략기술”이라 한다)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에 가목의 비율과 나목의 비율을 더한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는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2020년 세법개정을 통해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 등 기존 10개의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통합·재설계하여 신설되었음.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 전후 비교]

종 전	<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 >
① R&D 설비(1/3/7) ② 생산성 향상 시설(1/3/7)* * 단, 대기업은 '20년 2%, 중견·중소기업은 '20~'21년까지 5%, 10% 적용 ③ 안전 설비(1/5/10) ④ 에너지절약 시설(1/3/7) ⑤ 환경보전 시설(3/5/10) ⑥ 초연결(5G) 네트워크 시설(최대 3) ⑦ 의약품 품질관리 시설(1/3/6) ⑧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5/7/10) ⑨ 근로자 복지증진 시설(3/5/10) ⑩ 중소·중견기업 투자세액공제(0/2/3) ※ 괄호: 대/중견/중소기업 공제율(%)	⇒ (공제대상) 모든 사업용 유형자산 * 단, 토지와 건축물 등 제외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적용업종에서 소비성서비스업과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은 제외되며, 세액공제 대상은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용 유형자산인데 토지와 건축물 등은 제외됨. 또한, 중고품, 임대용 자산 및 리스에 의한 투자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됨.

세액공제액은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한 '기본공제 금액'과 직전 3년 평균 투자액을 초과하는 투자액에 대한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임. '추가공제 금액'은 '기본공제 금액'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제됨.

일반 시설투자에 대해서는 기본공제율이 대기업 1%·중견기업 5%~7.5%·중소기업 10%이며,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 및 연구개발시설에 대한 기본공제율은 대기업 3%·중견기업 6%~9%·중소기업 12%,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및 연구개발시설에 대한 기본공제율은 대기업 15%·중견기업 15%~20%·중소기업 25%임.

2024년 세법개정을 통해 중소기업 졸업유예 기간 종료 후 세액공제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점감구조가 도입되어 유예기간 종료 이후 3년 동안은 일반 중견기업 대비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고, 2025년 2월 세법개정에 따라 국가전략기술 중 반도체 분야에 대해서는 5%p 상향된 기본공제율이 적용됨.

[통합투자세액공제 유형별 공제율]

(단위: %)

구 분	기본공제			추가공제 ^{주)}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일 반	1	5, 7.5 ¹⁾	10	10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 및 연구개발시설	3	6, 9 ²⁾	12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및 연구개발시설	15	15, 20 ³⁾	25	
반도체 분야	20	20, 25 ⁴⁾	30	

주) 추가분=당해연도 투자액 - 직전 3년 평균 투자액

1) (~3년)7.5%, (4년~)5%

2) (~3년)9%, (4년~)6%

3) (~3년)20%, (4년~)15%

4) (~3년)25%, (4년~)20%

당초 신성장·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었으나, 국가전략기술에 대해서는 2023년 4월 법률에서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와 관련된 기술’로 직접 명시하는 것으로 개정되었고, 이후 바이오의약품, 미래형 운송수단 및 인공지능이 추가되었음³⁾.

3) 바이오의약품: 2023년 12월 세법개정
미래형 운송수단 및 인공지능: 2025년 3월 세법개정

[신성장·원천기술 분야 기술 현황]

구분	분야	기술
미래형자동차	자율 주행차	자율주행 기록 및 사고원인 규명 기술, 탑승자 탑승자 인지 및 인터페이스 기술 등
	전기 구동차	전기차 초고속·고효율 무선충전 기술, 하이브리드자동차의 구동시스템 고효율화 기술 등
지능정보	인공지능	학습 및 추론 기술, , 언어이해 기술 등
	사물인터넷 (IoT: Internet of Things)	IoT 네트워크 기술, IoT 플랫폼 기술 등
	클라우드(Cloud)	SaaS(Software as a Service) 기술, PaaS(Platform as a Service) 기술 등
	빅데이터(Big Data)	빅데이터 수집·정제·저장 및 처리기술, 빅데이터 분석 및 예측 기술 등
	착용형 스마트기기	신체 부착형 전자회로의 유연기관 제작기술 및 유연회로 인쇄기술, 유연한 양·음극 소재 및 전극 설계·제조기술 등
	IT 융합	지능형 전자항해 기술 등
	블록체인	블록체인 기술 등
	양자컴퓨터	양자컴퓨터 제작 및 활용 기술 등
	스마트 물류	지능형 콜드체인 모니터링 기술 등
차세대소프트웨어 (SW) 및 보안	기반 소프트웨어(SW)	융합서비스·제품의 소프트웨어 내재화 기술 등
	융합보안	사이버 위협 인텔리전스(Intelligence) 대응기술 등
콘텐츠	실감형 콘텐츠	가상현실(VR) 콘텐츠 기술 등
	문화콘텐츠	게임 콘텐츠 제작기술 등
차세대전자정보 디바이스	지능형 반도체·센서	고속 컴퓨팅을 위한 SoC 설계·제조 기술 등
	반도체 등 소재·부품	포토리지스트(Photoresist) 개발 및 제조기술 등
	유기발광 다이오드(OLED) 등 고기능 디스플레이	9인치 이상 능동형 유기발광 다이오드(AMOLED: Active Matrix Organic Light Emitting Diode) 패널 기능개선 및 부품·소재·장비 제조 기술 등
	3D프린팅	3D프린팅 소재·장비 개발 및 제조기술 등
	AR 디바이스	AR 디바이스 제조기술 등
차세대 방송통신	5세대(5G) 및 6세대 (6G)이동통신	5G 이동통신 기지국 장비 기술 등
	UHD (Ultra-High Definition)	지상파 UHD방송 송신기 성능 향상기술 등
바이오·헬스	바이오·화합물의약	방어 항원 스크리닝 및 제조기술 등
	의료기기·헬스케어	기능 융합형 초음파 영상기술 등
	바이오 농수산물·식품	비가열 및 고온·고압 전처리 기술 등
	바이오 화학	바이오매스 유래 바이오플라스틱 생산 기술 등
에너지·환경	에너지 저장 시스템(ESS: Energy Storage System)	비리튬계 이차전지 소재 등 설계 및 제조기술 등
	발전시스템	대형가스터빈 부품 및 시스템 설계·제작·조립·시험 평가기술 등
	원자력	원자로 냉각재 펌프 설계 기술 등
	오염방지·자원순환	미세먼지 제거 및 고정밀 미세먼지·온실가스 동시 측정 기술 등

구분	분야	기술
융복합소재	고기능섬유	탄소섬유복합재의 가공장비 및 검사장비 설계·제조기술 등
	초경량 금속	고강도 마그네슘 부품의 온간성형기술 등
	하이퍼 플라스틱	인성특성이 향상된 고강성 하이퍼플라스틱(High Performance Plastics) 복합체 제조 및 가공 기술 등
	구리합금	고강도 구리합금 설계·제조기술 등
	특수강	고기능성 H형강 제품 제조기술 등
	기능성 탄성·접착소재	고기능 불소계 실리콘 제조·가공 기술 등
	희소금속·소재	타이타늄 소재 제조기술과 금속재료 부품화 기술 등
로봇	첨단제조 및 산업로봇	고정정 환경 대응 반도체 생산 로봇 기술 등
	안전로봇	감시경계용 서비스로봇을 위한 주변환경 센싱 기술, 실내외 전천후 위치인식 및 주행 기술 등
	의료 및 생활 로봇	수술, 진단 및 재활 로봇기술 등
	로봇공통	실내외 소음환경에서의 대화신호 추출 기술 등
항공·우주	무인이동체	무인기 지능형 자율비행 제어 시스템 기술 등
	우주	위성본체 부분품 개발기술 등
첨단 소재·부품·장비	첨단 소재	고기능성 알루미늄 도금강판 제조 기술 등
	첨단 부품	고정밀 롤러베어링 및 볼베어링 설계·제조 기술 등
	첨단 장비	첨단 머시닝센터 설계·제조기술 등
탄소중립	탄소포집·활용·저장(CCUS)	연소 후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 등
	수소	부생수소 생산기술 등
	신재생에너지	고체산화물 연료전지 지지형셀·스택·시스템 설계 및 제조 기술 등
	산업공정	합수소가스 활용 고로취입기술 등
	에너지효율·수송	지능형 전력계통(Smart Grid) 설계 및 제조기술, 그린수소 생산 해양 플랫폼 설계기술 등
방위산업	방산장비	추진체계 기술 등
	전투지원	유무인복합체계 기술 등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 (2025. 2. 28. 개정)

[국가전략기술 분야 기술 현황4)]

분야	기술
반도체	첨단 메모리 반도체 설계·제조 기술
	차세대 메모리반도체(STT-MRAM, PRAM, ReRAM, PIM, HBM, LLC, CXL, SOM) 설계·제조기술
	고속 컴퓨팅을 위한 SoC 설계 및 제조(7nm이하) 기술(tem on Chip) 설계 및 제조(7nm 이하) 기술
	차세대 디지털기기 SoC 설계·제조기술
	고성능 마이크로 센서의 설계·제조·패키징 기술
	차량용 반도체 설계·제조기술
	에너지효율향상 반도체 설계·제조 기술
	에너지효율향상 전력 및 전력관리 반도체[BCDMOS(Bipolar-CMOS-DMOS), UHV(Ultra High Voltage), 고전압 아날로그 IC(Integrated Circuit), PMIC(Power Management IC)] 설계·제조기술(0.35 μ m이하)
	차세대 디지털기기·차량용 디스플레이 반도체 설계·제조기술
	SoC 반도체 개발·양산 위한 파운드리 분야 7nm 이하급 제조공정 및 공정 설계기술
	WLP, PLP, SiP, 플립칩 기술 등을 활용한 2D/2.5D/3D 패키징 공정기술 및 패키징 관련 소재·부품·장비설계·제조기술
	반도체용 실리콘 기판 및 화합물 기판 개발 및 제조기술
	첨단 메모리반도체 및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SoC 반도체 파운드리 소재·장비·장비부품 설계·제조기술
	포토리지스트(Photoresist) 개발 및 제조기술
	원자층증착법 및 화학증착법을 위한 고유전체용 전구체 개발 기술
	고순도 불화수소 개발 및 제조기술
	블랭크 마스크 개발 및 제조기술
	고기능성 인산 제조 기술
	고순도 석영(쿼츠) 도가니 제조 기술
	코트막형성재 개발 및 제조기술
	파운드리용 IP 설계 및 검증 기술
	고성능·고효율 시스템 반도체의 테스트 기술 및 테스트 관련 장비, 부품 설계·제조기술
	차세대 3D 적층형 반도체 설계·제조 및 관련 신소재 개발 기술
이차전지	고에너지밀도 이차전지 팩 제조기술
	고성능 리튬이차전지 부품·소재·셀 및 모듈 제조 기술
	사용후 배터리 평가 및 선별 기술
	사용후배터리 재활용 기술
	차세대 리튬이차전지 부품·소재·셀 및 모듈 제조 기술
	하이니켈 양극재 제조기술
	장수명 음극재 제조기술
	이차전지 분리막 및 전해액 제조기술

4) 2025년 2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미래형 운송수단 및 인공지능 분야가 국가전략기술에 추가되었으나, 신성장·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개정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음(2025년 10월 기준).

분야	기술
	이차전지 부품 제조기술
	양극재용 고순도 금속 화합물 제조·가공기술
백신	방어 항원 등 스크리닝 및 제조기술
	비임상 시험 기술
	임상약리시험 평가기술(임상 1상 시험)
	치료적 탐색 임상평가기술(임상2상 시험)
	치료적 확증 임상평가기술(임상3상 시험)
	원료 및 원부자재 등 개발·제조 기술
	생산장비 개발·제조 기술
디스플레이	AMOLED 패널 설계·제조·공정·모듈·구동 기술
	친환경 QD(Quantum Dot) 소재 적용 디스플레이 패널 설계·제조·공정·모듈·구동 기술
	Micro LED 디스플레이 패널 설계·제조·공정·모듈·구동 기술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용 증착·코팅 소재 기술
	디스플레이 TFT 형성 장비 및 부품 기술
	OLED 화소 형성·봉지 공정 장비 및 부품 기술
	디스플레이 하이브리드 커버 윈도우 소재 기술
	마이크로LED 에피(Epi)·전사·접합 소재, 부품, 장비 기술
수소	수전해 기반 청정수소 생산기술
	탄소포집 청정수소 생산기술
	수소연료 저장·공급 장치 제조기술
	수소충전소의 수소 생산·압축·저장·충전 설비 부품 제조기술
	수소차용 고밀도 고효율 연료전지시스템 기술
	연료전지 전용부품 제조기술
	수소 가스터빈(혼소·전소) 설계 및 제작 기술
	수소환원제철 기술
	수소 저장 효율화 기술
	수소 처리 바이오에너지 생산기술
미래형 이동수단	주행상황 인지 센서 기술
	주행지능정보처리 통합시스템 기술
	주행상황 인지 기반 통합제어 시스템 기술
	전기동력 자동차의 구동시스템 고효율화 기술
	전기동력 자동차의 전력변환 및 충전 시스템 기술
바이오 의약품	바이오 신약(바이오 베타(Bio Better)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후보물질 발굴 및 바이오 신약 제조 기술
	바이오시밀러 제조 및 개량 기술
	비임상 시험 기술
	임상약리시험 평가기술(임상1상 시험)
	치료적 탐색 임상평가기술(임상2상 시험)
	치료적 확증 임상평가기술(임상3상 시험)
	바이오의약품 원료·소재 제조기술

분야	기술
	바이오의약품 부품·장비 설계·제조기술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의2 (2025. 2. 28. 개정)

□ R&D 세액공제와 통합투자세액공제 조세지출은 모두 2024년에 크게 감소하였는데, 이는 2023년 기업 실적 악화에 따라 2024년 기업 결손 발생으로 공제액이 이월된 것에 기인함. 다만, 기업 실적 회복과 임시투자세액공제 등의 공제액 이월 등을 고려할 때 2025년에는 다시 조세지출 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⁵⁾

R&D 세액공제에 따른 조세지출은 2023년 4조 6,302억원에서 2024년 2조 9,575억원으로 감소하였으나, 2025년 및 2026년에는 다시 4조원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R&D 세액공제 조세지출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소득세	910	954	1,057	1,081	1,015	951	990
법인세	26,430	26,342	36,173	45,221	28,560	40,522	42,964
합 계	27,340	27,296	37,231	46,302	29,575	41,473	43,954

주: 2025, 2026년도는 전망치임

자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

통합투자세액공제 조세지출은 2023년 2조 799억원에서 2024년 1조 7,693억원으로 감소하였으나, 2025년 및 2026년에는 다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5) 2026년도 조세지출예산서

[통합투자세액공제 조세지출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소득세	217	491	810	1,036	1,269	1,477	1,505
법인세	6,009	12,969	21,187	19,764	16,424	24,204	28,571
합 계	6,226	13,459	21,997	20,799	17,693	25,681	30,076

주: 2025, 2026년도는 전망치임
자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

2024년 법인세 R&D 세액공제 신고 현황을 살펴보면, 중소기업 40,163개가 1조 3,398억 3,200만원을 신고했고, 일반법인 1,584개가 1조 5,161억 3,200만원을 신고했음.

[2024년 법인세 R&D 세액공제 신고 현황]

(단위: 개, 백만원)

수입금액 규모	중소기업		일반법인	
	신고 법인수	금액	신고 법인수	금액
10억원 이하	4,073	16,914	1	0
20억원 이하	5,980	47,225	3	98
50억원 이하	11,292	172,356	8	218
100억원 이하	8,110	220,769	15	424
200억원 이하	5,437	251,052	40	2,444
300억원 이하	2,052	153,812	46	2,526
500억원 이하	1,754	182,008	76	6,914
1,000억원 이하	1,173	199,823	164	24,890
5,000억원 이하	292	95,873	846	264,524
5,000억원 초과	0	0	385	1,214,094
합계	40,163	1,339,832	1,584	1,516,132

자료: 국세통계포털

2024년 법인세 통합투자세액공제 신고 현황을 살펴보면, 중소기업 10,375개가 4,484억 5,400만원을 신고했고, 일반법인 1,899개가 1조 1,036억 2,000만원을 신고했음.

[2024년 법인세 통합투자세액공제 신고 현황]

(단위: 개, 백만원)

수입금액 규모	중소기업		일반법인	
	신고 법인수	금액	신고 법인수	금액
10억원 이하	1,223	2,212	4	166
20억원 이하	1,094	4,481	2	27
50억원 이하	1,979	17,187	11	258
100억원 이하	1,717	34,593	34	715
200억원 이하	1,724	64,686	70	2,733
300억원 이하	817	51,818	69	3,603
500억원 이하	908	89,515	126	7,554
1,000억원 이하	708	115,518	241	22,376
5,000억원 이하	205	68,443	899	230,499
5,000억원 초과	0	0	443	835,687
합계	10,375	448,454	1,899	1,103,620

자료: 국세통계포털

나. 국가전략기술 관련 세액공제 이월공제 기간 연장(박대출 의원안)

현 행	개정안
☐ 세액공제 이월공제(제144조) ○ 내용: 세액공제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최저한 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이후 10년간 이월공제 가능 - 대상: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R&D 세액공제, 통합투자세액공제 등 ○ 공제순서: 이월공제금액을 해당연도 발생 공제액보다 먼저 공제	☐ 국가전략기술 관련 R&D 세액공제 및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경우 이월공제 기간 10년 연장 ○ 내용: 세액공제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최저한 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이후 10년간 이월공제 가능 (단, 국가전략기술 관련 R&D 세액공제 및 통합투자세액공제는 20년간 이월공제 허용) - 대상: (현행과 같음) ○ 공제순서: (현행과 같음) ○ 시행일: 2026. 1. 1. ○ 적용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분부터 적용

* 박대출의원안 2025. 9. 11. 발의(의안번호 12902)

☐ 개정안은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전략기술 관련 R&D 세액공제와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세액공제액 이월공제 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임.

☐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제도(법 제144조)는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법인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이후에

이월하여 공제를 받도록 하는 것임.

2020년 세법개정 이전에는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기간은 각 세액 공제 제도별로 5년, 7년, 또는 10년으로 차등화되어 있었는데, 2020년 세법개정을 통해 일괄적으로 이월공제 기간이 10년으로 확대되었음.

□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효과가 기대될 수 있음.

첫째, 대규모 R&D 투자 또는 설비 투자 등으로 이익이 발생할 때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기업실적 악화 등으로 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10년 내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이월공제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기업이 R&D 투자 및 설비 투자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유인을 제공하고 세액공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음.

둘째,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주요국들은 R&D 및 설비투자 지원을 위해 장기간의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를 허용하고 있어 기업의 대외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음. 예를 들어, 영국은 R&D 세액공제액의 이월기간에 제한이 없고, 미국은 20년 간 이월공제가 허용됨.⁶⁾

□ 다만, 개정안에 따라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기간이 늘어나면 개정 전에는 이월공제 기간(10년)이 지나 세액이 공제되지 못했을 경우에도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되어 세액공제액이 늘어나고 세수감소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음.

6)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혁신성장을 위한 조세지원제도 연구」, 2021. 12.

또한, 기획재정부는 최근 이월공제 기간을 10년으로 확대하였으므로, 이월공제 기간 연장에 대한 실질적 수요가 발생한 이후에 개정 필요성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154
